

기 안 용 지

분류 기호 문서 번호	도제415~ 99	전 화 번호 (전화번호)	전 결 국 정 전 결 사 항
처리 기간	제 2 부 시 장		
시행 일자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119	국지국장
	도시계획과장	9	국지과장
	지역계획과장	10.	
기 안 체 임자	권 원	25. 9. 11 김 정길	협 회 법무 담당관 (고시안심사) 종합계획 계장 가로계획 계장
경 수 신 찰	각 안 참 조	부 고지자 / 46 호	통 지 날짜 61. 9. 16. 11:48:21
제 목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		

제 1 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제80호 (75. 6. 3)로 시행허가 된 연세대학교 (서대문구 신촌동 산9~1)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으로부터 별첨파일이 오첨이 있어 내용 검토한 바

2.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당시 허가 면적 2.916㎡ 중 면적적인 사업계획으로 금회 785㎡만 사용 확수로 하는 것으로서

3. 본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종법 제26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 (73. 4. 4)의 첨한 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별첨파일이 인가 고시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안 고시 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 .. 호

고시안심사 1975. 9. 17 제 143 호	총
설자자: 협재자: 김운경	
기 결	
100mm x 200mm (세로) x 100mm (세로) 소정 기록부 제 2 - 436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호 (75. 6. 3)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 26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호 (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및 연세대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연세대학교)

3. 사업시행 면적: 785 평 (약 2591 m²)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5. 사업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가. 착수년월일: 1975. 10

나. 준공 예정년월일: 1975. 11. 30.

제 3 안 인가증(안)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연세대학교)

3. 사업시행 면적: 785 평 (약 2591 m²)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5. 사업기간, 착공년월일: 1975. 10.

..... 준공예정년월일: 1975. 11. 30.

6. 인가 내용 : 별첨 인가 조건 및 도면 표시와 같음
위와 같이 인가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26조 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학교) 실시계획
을 인가함

1975. 9.

서울특별시장

제주안

수신 서대문구청장

발신 시장

제 목 동 친

1. 당시 도시계획 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떨쳤고 시운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 시행에 차질
없기 바라며

2. 본 사업은 기획 시달된 감독 권한 처임 규정과 도시 계획법 제4조에 의한 사무 취급 규정에 의거 인가조건 및 설치 도서에 의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사업 완료후에는 준공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기 바람.

첨부 고시문 사본 및 인가증 ~~상장~~, 도면 각 1부.

315 안

수신 총무처 장관(문화공보실장)

발신사장(회장)

제 목 관(시)보 제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관(시)보 계재를 의뢰 하오니 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계재 구분 : 고<|

나. 관(시) 보 개재 전명: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
계획 인가

다. 법적 근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1부)

स्वरूप देखने की अवसरा नहीं मिलती।

수신 학교 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 . . 발신 시장
제목 동전.

1. 연세법 제 96호 (75. 9. 8)에 관련입니다.

2. 위내호로 요청하신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별첨 고시문사본 및 인가증, 도면 등과 같이 인가
하였기 통보하오니 본 계획도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구청장
의 지시 감독을 받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사 착수권 척공계(예정 공정률 포함)를, 종용후
에는 준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감독관)이
임명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4. 본 사업 진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사본 및 인가증, 도면 각 1부. 끝.

인·가·조·전

1. 이 사업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신청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되 다음 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시 계획에 정하는 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법에 의거 허가 받은 후 건축 사용도록 할 것
3. 공사 진행에 따른 인접지의 피해 및 통행인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지구내 하수도 시설은 공공시설물의 건물 기타 구조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여 하수도 유지 관리에 지장 없도록 한다.
5. 이 공사는 중도에 중단 또는 미사용하거나 변경 사용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기간의 연장, 기타 허가 조건과 행정지시에 불응할 시는 관계 법에 의거 ~~제거~~ ^{의거제거} 할 수 있다.
6. 이 인가 조건과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임목, 벌채 및 이식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할 것
8. 사업 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고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가. 물의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
 - 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통행상의 피해
9. 위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인가를 취소할 것이며, 당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끝.